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6. 1 선고 2020가합520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
담당변호사 이원창

피 고 B
변 론 종 결 2023. 4. 20.
판 결 선 고 2023. 6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5. 22.부터 2020. 6. 21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2020. 8. 11.까지는 연 9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8. 10. 11.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C 주식회사, 보험가입금액 250,000,000원, 보험기간 2018. 11. 1.부터 2019. 4. 30.까지로 하는 이행(계약)보증보험계약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위 C에 지급하였다.

나.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, 2항 및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.

제3조(손실보상 및 비용부담)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“보험사고”라 합니다)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,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.

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
(중략)

제7조(관할법원의 합의)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구미지점(사무소)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. 다만,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점·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점(사무소)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·지역본부 또는 지점(사무소)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다. 원고는 연체이율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9%로 각 정하였다.

라. 위 C은 피고가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20. 5. 21. C에게 25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3,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(관할위반)

가. 피고 항변의 요지

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7조(관할법원의 합의) 부분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이며, 피고의 주소지가 문경시이므로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.

나. 구체적 판단

1)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,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,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.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,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,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,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12. 16.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).

그리고 이 같은 법리는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 외에도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초에는 관할권이 없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추가하는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.

2) 갑 제1, 3,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 제7조에서 “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구미지점(사무소)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. 다만,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점·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점(사무소)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·지역본부 또는 지점(사무소)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.”라고 규정한 사실, ② 원고 회사는 서울 종로구 D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, 구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관리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, ③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이를 관할하던 영업점은

구미지점이었는데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 업무가 원고 회사 구미지점에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원고 회사의 대구신용지원단에 이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.

3)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, ① 원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법원 외에 약정을 체결한 회사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추가하되,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상업무를 위하여 이를 다른 지점 등에 이관하고 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도록 관할법원을 확대하고 있을 뿐인 점, ② 피고의 주소지인 구미시와 관할법원의 확대로 이 사건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의 거리 및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, 위 피고의 주소지에서 응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의 비교,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유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, 이 같은 관할법원의 추가 및 그 추가된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도록 된 결과가 피고에게 부당하게 큰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정상 관할에 관한 규정은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무효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.

4) 결국 피고의 위 관할위반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, 원고가 C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무의 이행으로 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0. 5. 22.부터 2020. 6. 21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2020. 8. 11.까지는 연 9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수, 판사 유영원, 판사 강화현